

2001. 12. 21
제112회 제2차 정례회

2001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신 덕 찬)

2001년 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1. 2001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제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 고
계	105,953,166	97,797,322	8,155,844	8.34	
일반회계	93,405,198	88,420,354	4,984,844	5.64	
특별회계	12,547,968	9,376,968	3,171,000	33.82	

2.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

가. 예산안의 규모

(단위 : 천원)

제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 고
1,231,834	1,230,634	1,200	1%	

나. 증감된 세항 · 세세항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 고
합 계	1,231,834	1,230,634		
의사운영	907,354	906,154	1,200	
의정활동	324,480	324,480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①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정본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즉, 이미 확정하여 성립된 당초 예산의 집행과정 중인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법률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 이들 부족경비를 본예산에 보정·추가하는 추가예산과,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그 총 지출액 한도 내에서 예산내 용에 변경을 가하는 경정예산을 말하는데,

추가예산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증액하는 것이며, 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산총칙·계속비 등도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예산금액의 감소, 부서·소관·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의 변경, 예산목적의 변경, 채무부담행위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명시이월비의 범위변경 등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는 추정사유의 타당성 여부, 추정요건에의 부합여부, 추정시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3,063만4천원 대비 120만원 증액된 12억3,18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Sever구축, 컴퓨터·스캐너 구입으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